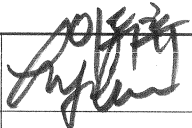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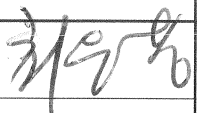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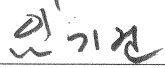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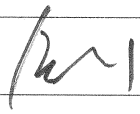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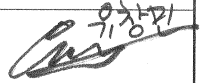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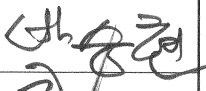



등록번호	재무과-6639
등록일자	2016. 6. 30.
결재일자	2016. 6. 30.
공개구분	공개

결	주무관	재무팀장	재무과장 (간사)	재정위원장
재	모영채	정용석	김헌재	인기건
협조	사무국장		유태영	

## 2016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2016. 6. 24.(금) 14:00							
장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II							
안건	1. 2016학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결산 (재무보고서 및 회계감사 보고 포함)							
심의·의결 사항	1. 2016학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원안 통과 2.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결산 → 원안 통과							
위원명단	당연직	교무처장	이두휴		일반직	교수	최용용	
		학생처장	최정기	불참		교수	임기건	
		연구처장	송진규			직원	박춘곤	
		기획조정처장	안영진	불참		직원	김봉선	불참
		사무국장	서병재	불참		학생	유창민	
		학무본부장	조영순	불참		학생	추성준	불참
		평의원회부의장	김원재	불참		외부	박승현	
						외부	전종현	
	○ 참석현황: 참석(8명), 불참(7명) ※ 배석: 재무과장(간사) 김헌재, 재무팀장 정용석, 예산담당자 모영채, 결산담당자 서형우, 회계법인 회계사 유태영							

## ■ 회의 내용

### I. 개의((開議) 선언 (위원장 13:10)

### II. 2015학년도 제6회 및 2016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승인

- 위원장: 2016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유창민위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지침”에 대한 ‘부(否)’ 심의의견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
- 유창민 위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 강의평가 결과가 계속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함.
- 이두휴 위원: 강의평가는 교원의 성과급적연봉제와 교육우수교수 선정에 2중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기존 연구보조비를 대신하는 개념으로써 교원의 연구실적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영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 것임.  
(위원들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안전에 대한 동의를 얻어)
- 위원장: 제4회 및 제5회 회의록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함.

### III. 안전 심의,

#### 1. 2016학년도 대학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재무과장: 회의자료와 추가 배부자료에 의거 2016학년도 추경의 편성개요, 추경재원, 가용재원, 주요사업 등을 설명함.
- 최웅용 위원: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예산 총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2016학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월금 25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32억원의 추가 이월금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가이월금이 발생한 이유를 문의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 더 활발하고 관심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모든 이월금이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재무과장: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예산 총액 차이는 종전 일반회계 예산이 대학회계로 편입되었음을 설명하고, 본예산 편성시보다 32억의 이월금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불용액, 수입대체 경비 불용액, 예산 집행중지 및 이·전용 억제에 따른 불용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금액이 커졌음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선중한 가결심을 통해 본예산에 이월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송진규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보조금 중 예측 가능한 보조금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요청함.
- 재무과장: 확정된 보조금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겠음.
- 최응용 위원: 추경예산 심의는 가용재원뿐 아니라 보조금 등 추가되는 전체 170여억원이 대상이어야 함.
- 재무과장: 추경예산 심의가 용이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국가지원금, 보조금 등을 분리하였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음.
- 박춘곤 위원: 국가지원금, 보조금, 수입대체경비는 용도가 정해졌고 예산 현액에 반영되었으므로 가용재원이 아닌 것을 이해하겠는데, 발전기금 전입금 중 병원 전입금 3억원이 반영이 안된 이유를 문의함.
- 재무과장: 병원전입금 3억원은 부족한 공공요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가용재원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 최응용 위원: 이·전용신청 사항은 별개의 심의가 아닌지 문의함.
- 재무과장: 이용은 재정위원회 심의 사항이고, 전용은 그렇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반영하였음.
- 유창민 위원: 추경사업 4번 “기초학력증진 사업” 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고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햇들마루나 명학회관 등 학생시설 지원 예산”은 사업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음. 또한, 10번 영상뉴스 제작비가 증액된 이유를 문의함.
- 교무처장: 기초학력증진사업의 제도 시행 문제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학생들의 건의가 있음을 고려하고 참고하겠음.
- 재무과장: 재정위원회 심의 사항은 예산편성조정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건의는 학생과 및 시설과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유창민 위원: 수용함.
- 재무팀장: 영상뉴스사업은 전년도 사업 중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 되었기에 올해도 지원하기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  
(위원들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얻어)
- 위원장: 2016학년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 2.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7 20 만

11 0 0

2 2

- 유태영 회계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였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다만, 대학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분임기

관의 자체 관리계좌가(총액 14억원 정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향후 정리가 필요함.

- 재무과장: 일부 분임기관의 발전기금, 과운영비, 친목회 등의 예금계좌 정리를 추진하겠음.
- 재무과장: 회의자료와 추가 배부자료에 의거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현황, 세출현황, 증감요인 등 주요사항을 설명함.
- 최응용 위원: 재무보고서에는 모든 계좌의 금액이 나타나야 하며, 분임기관의 잘못 개설된 계좌는 지적해서 보고해야 함을 회계사에게 요청하고, 재무보고서 5쪽 잉여금 184억원 및 10쪽 퇴직급여충당부채, 선수등록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선수등록금 313억원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요청함.

이어, 재무보고서 11쪽 재정운영표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재무과 요약자료의 복리후생비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문의함.

- 유태영 회계사: 재무보고서 22쪽 예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에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잉여금 18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선수등록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재정운영표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재무과 요약자료의 복리후생비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함.
- 최응용 위원: 재무보고서에 기본자산 등 전남대 자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요청함.
- 유태영 회계사: 대학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며, 자산의 경우 D-Brain 자료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을 받은 기준에 따라서 타 대학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과 논의하여 일관된 포맷에 따라 작성하였음.  
(위원들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안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얻어)
- 위원장: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 ■ 기타 사항

- 김원재 위원의 불참에 따라 금번 회의록에 간인을 대신할 위원으로 최응용 위원을 결정 함.
- 유창민 위원: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제4조(위원회의 구성)를 당연직 3명, 일반직 11명으로 개정 및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개정을 요청함.

- 재무과장: 규정 개정은 소관부서의 개정 요청, 규정심의위원회와 평의회 및 학무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친 후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함.
- 유창민 위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6호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재정회계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 위원장: 재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개정을 심의할 수 있으나 대학의 다른 규정과 같이 관련 심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함.
- 유창민 위원: 다음 재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함.
- 위원장: 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재정위원장 교체 등 재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을 요청함.
- 최응용 위원: 재정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방대한 재정회계 자료에 대해 심의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재정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함.
- 박승현 위원: 재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내용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충분한 설명을 통해 회의 진행을 하고 자료를 누적 관리·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안함.

■ 폐회 선언 (위원장 15:45)

2016. 6. 24.

기록자: 서기 (재무팀장) 정 용 석

확인자: 간사 (재무과장) 김 현 재

기상년 7/100

본문